

의안번호	2210382
의 퇴 인	박수민의원
회 답 일	2025.6.20.
추 계 번호	25D27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전일로 규정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대학 밀집지역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51억 6,400만원, 2030년 935억 1,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948억 4,700만원(연평균 389억 6,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합계	연평균
선거일 전일 사전투표 실시 (제6조의2 등)	51,461	—	44,444	—	89,919	185,824	37,165
대학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 (안 제148조제1항)	3,703	—	1,727	—	3,593	9,023	1,805
합계	55,164	—	46,171	—	93,512	194,847	38,969

- 주: 1.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선거일 전일 사전투표 실시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대학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안 제148조제1항)은 재량규정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개정안은 선거일 전일에 사전투표를 선거일의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운영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선거일이 현행 1일에서 2일로 하루 연장되는 것이며, 본 추계에서는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시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하루 연장하는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며, 재외선거, 보궐선거는 제외하기로 함
3. 본 추계에서는 대학 밀집지역을 행정안전부의 연령별 주민등록인구현황(2024년 9월말 기준)에서 19~30세 인구비율이 동일한 연령대의 전국 평균(14%)보다 1.5배 많은 지역으로 가정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제도를 부재자투표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존 사전투표제도에서 명칭 변경 이외에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는 재정수반요인은 아래와 같음			
1	안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제155조(투표시간)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부재자투표기간 및 사전투표일(선거일 전일을 말한다)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시간을 보장 사전투표일은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음	의무규정
2	안 제37조의2(부재자투표신고) 신설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8조에 따라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의무규정
3	안 제148조제1항(부재자투표소의 설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 밀집지역에 부재자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제155조(투표시간)	○	-
2	안 제37조의2(부재자투표신고) 신설	X	부재자투표신고 인원, 평균 등기우편 요금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3	안 제148조제1항(부재자투표소의 설치)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인 ‘선거일 전일 사전투표 실시’와 ‘대학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에 한정하여 추계
 - 개정안은 선거일 전일에 사전투표를 선거일의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운영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현행 1일에서 2일로 하루를 연장하는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시 선거일에 한하며, 재외선거, 보궐선거는 제외
 - － 재외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에는 실시하지 않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만 실시하여 추가재정소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외하기로 함
 - 개정안에 따라 현행 사전투표제도가 부재자투표제도로 변경되는 경우, 현행 사전투표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재자투표신고, 대학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은 현행 사전투표제도와 차이가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 개정안에서 규정한 부재자투표소는 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소와 유사하므로 사전투표소 설치 및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본 추계에서는 선거일 전일 사전투표 실시(선거일 하루 연장)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항목을 투표소 사례금, 투표관리요원 수당과 식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편의제공 관련 비용으로 한정하여 추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투표관리 관련 내역에서 선거일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도출
- 본 추계에서는 대학 밀집지역을 행정안전부의 연령별 주민등록인구현황에서 19~30세 인구비율이 동일한 연령대의 전국 평균(14%)보다 1.5배 많은 읍·면·동지역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4)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3%	1.9%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선거일 전일 사전투표 실시(안 제6조의2 등)

- 개정안은 선거일 전일에 사전투표를 선거일의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운영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현행 1일에서 2일로 하루를 연장하므로 투표소 사례금, 투표관리요원 수당과 식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편의제공 관련 비용에서 추가재정소요 예상
- 본 추계에서는 직전 공직선거별 투표소 수, 투표관리요원 인원,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된 차량 및 보조인 수에 각 항목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
 - (투표소 사례금) 2026년 14억 4,700만원, 2030년 28억 9,300만원으로 추정
 - 직전 공직선거별 투표소 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제8회) 14,465개소, 국회의원선거(2024년 제22대) 14,259개소, 대통령선거(2022년 제20대) 14,464개소
 - 투표소 사례금은 1일 기준 1개소 당 10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

[표 2] 투표소 사례금 추정: 2026~2030년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투표소 수(a, 개소)	14,465	-	14,259	-	28,929
1개소 사례금(b, 만원)	10	-	10	-	10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1,447	-	1,426	-	2,8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투표관리요원 수당과 식대) 2026년 497억 6,800만원, 2030년 865억 3,400만원으로 추정
 - 투표관리요원은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으로 구분되며, 1일 기준 수당은 각각 19만원, 13만원, 10만원이고 식대는 21,000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

[표 3] 투표관리요원 수당과 식대 추정: 2026~2030년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전·지선)
인원 (a, 명)	투표관리관	14,465	—	14,259	—	28,929
	투표사무원	191,978	—	125,295	—	334,454
	투표참관인	146,502	—	172,253	—	247,332
수당과 식대 (b, 원)	투표관리관	211,000	—	211,000	—	211,000
	투표사무원	151,000	—	151,000	—	151,000
	투표참관인	121,000	—	121,000	—	121,000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투표관리관	3,052	—	3,009	—	6,104
	투표사무원	28,989	—	18,920	—	50,503
	투표참관인	17,727	—	20,843	—	29,927
	합계	49,768	—	42,772	—	86,5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편의제공 관련 비용) 2026년 2억 4,600만원, 2030년 4억 9,200만원으로 추정
 - 가장 최근의 공직선거인 2024년 국회의원선거 시 장애인 이동차량 수 및 활동보조인 인원,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교통편의차량 동승원 인원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
 - 장애인 이동차량 504대, 활동보조인 504명, 교통편의차량 동승원은 1,200명이고 1일 기준 사례금은 장애인 이동차량 20만원, 활동보조인과 동승원은 85,000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

[표 4]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편의제공 관련 비용 추정: 2026~2030년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전·지선)
수량 (a, 대, 명)	장애인이동차량	504	—	504	—	1,008
	활동보조인	504	—	504	—	1,008
	교통편의차량 동승원	1,200	—	1,200	—	2,400
사례금 (b, 원)	장애인이동차량	200,000	—	200,000	—	200,000
	활동보조인	85,000	—	85,000	—	85,000
	교통편의차량 동승원	85,000	—	85,000	—	85,000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장애인이동차량	101	—	101	—	202
	활동보조인	43	—	43	—	86
	교통편의차량 동승원	102	—	102	—	204
	합계	246	—	246	—	49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선거일 전일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14억 6,100만원, 2030년 899억 1,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5] 선거일 전일 사전투표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투표소 사례금	1,447	—	1,426	—	2,893
투표관리요원 수당과 식대	49,768	—	42,772	—	86,534
장애인 등 교통편의제공 관련 비용	246	—	246	—	492
합계	51,461	—	44,444	—	89,9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대학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안 제148조제1항)

-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 밀집지역에 부재자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본 추계에서는 대학밀집지역 148개소에 부재자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부재자투표소 설치 수량)**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설치·운영되는 부재자투표소는 148개소
 - 행정안전부의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현황(2024년 9월 말 기준)²⁾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19~30세 연령구간의 인구비율이 동일한 연령구간의 전국 평균(14%)³⁾보다 1.5배 높은 읍·면·동을 산출한 결과 총 148개이고 본 추계에서는 해당 읍·면·동에 부재자투표소를 1개소씩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1개소당 비용)** 부재자투표소 1개소당 비용은 2026년 2,502만원, 2030년 1,214만원으로 추정
 - 부재자투표소 1개소당 설치·운영비용은 2022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설치단가인 1,018만원⁴⁾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

2)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 수(검색날짜 2024.10.15.)

3) 행정안전부의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현황(2024년 9월 말 기준)에 따르면, 총 인구는 51,248,223명이고 19~30세 인구는 7,168,883명으로 14.0%

- 다만, 추계 첫해인 2026년에만 사전투표운용장비 비용⁵⁾ 1,381만원⁶⁾을 추가

[표 6] 부재자투표소 1개소 당 비용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전·지선)
1개소 당 설치·운영비용	1,121	1,144	1,167	1,190	1,214
사전투표운용장비 비용	1,381	-	-	-	-
합계	2,502	1,144	1,167	1,190	1,2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 밀집지역에 부재자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7억 300만원, 2030년 35억 9,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7] 대학 밀집지역에 부재자투표소 추가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2026~2030년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전·지선)
수량(A, 개소)	148	-	148	-	296
1개소 당 비용(B, 만원)	2,502	-	1,167	-	1,214
추가재정소요(=A×B, 백만원)	3,703	-	1,727	-	3,5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51억 6,400만원, 2030년 935억 1,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948억 4,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전·지선)	합계
선거일 전일 사전투표 실시	51,461	-	44,444	-	89,919	185,824
대학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 설치	3,703	-	1,727	-	3,593	9,023
합계	55,164	-	46,171	-	93,512	194,8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4) 2022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액은 총 35,754백만원으로 1개소당 설치·운영 단가는 1,018만원(35,754백만원 ÷ 3,512개소)으로 추정
- 5) 사전투표소 설치 첫해에는 노트북, 발급기 등 사전투표운용장비 제작이 필요하며, 내구연한(5년 정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5년 동안 추계 첫해인 2026년에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2년 예산 편성 기준 사전투표운용장비 비용은 1개소 당 1,254만원(330만원 × 3.8대)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6년 1,381만원으로 추정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이며, 선거일 전일 사전투표 실시하는 경우의 재외선거,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하고 읍·면·동 기준 인구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